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4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6. 6. 21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함

나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</p> <p>1. "서울공공주택"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<u>임대주택법</u>」 제2조제1의2호, 제3의2호 및 제3의3호에 따른 주택</p> <p>다. ~ 마.(생략)</p> <p>바. <u>기타</u>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~ 마.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 임대주택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

제2조제1호바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일정기간”을 “일정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
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긴급을 요하는”을 “긴급한”으로 하고 “그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행일로부터”를 “시행일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</p> <p>1. "서울공공주택"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<u>임대주택법</u>」 제2조제1의2호, 제3의2호 및 제3의3호에 따른 주택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<u>기타</u>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</p> <p>제7조(공급계획의 내용)</p> <p>1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제8조(장기전세주택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제1항에</u> 규정한 장기전세주택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,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)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 임대주택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7조(공급계획의 내용)</p> <p>1 ~ 4. (생략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8조(장기전세주택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제1항에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9조(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)</p>

현행	개정안
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(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일 정 기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0조(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호당 최대 1,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단,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실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위원장의 직무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</p>	<p>제16조(위원장의 직무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경우에는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</p>

